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152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나5393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15223 판결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정빈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와 C 사이의 2017. 7. 2. 100만 원, 2017. 7. 31. 106만 원, 2017. 9. 30. 106만 원, 2017. 10.

31. 107만 원, 2017. 12. 4. 106만 원, 2018. 1. 2. 106만 원, 2018. 1. 31. 145만 원, 2018. 4. 4. 291만 원, 2018. 5. 4. 145만 원, 2018. 7. 25. 268만 원, 2018. 8. 25. 267만 원, 2018. 9. 21. 273만 원, 2018. 10. 25. 267만 9,000원, 2018. 11. 24. 267만 원, 2018. 12. 25. 548만 원, 2019. 1. 22. 43만 원, 2019. 1. 29. 300만 원, 2019. 2. 25. 300만 원, 2019. 3. 27. 3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5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3496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18. 'C은 원고에게 54,093,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7. 7. 2. 100만 원, 2017. 7. 31. 106만 원, 2017. 9. 30. 106만 원, 2017. 10. 31. 107만 원, 2017. 12. 4. 106만 원, 2018. 1. 2. 106만 원, 2018. 1. 31. 145만 원, 2018. 4. 4. 291만 원, 2018. 5. 4. 145만 원, 2018. 7. 25. 268만 원, 2018. 8. 25. 267만 원, 2018. 9. 21. 273만 원, 2018. 10. 25. 267만 9,000원, 2018. 11. 24. 267만 원, 2018. 12. 25. 548만 원, 2019. 1. 22. 43만 원, 2019. 1. 29. 300만 원, 2019. 2. 25. 300만 원, 2019. 3. 27. 3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40,459,000원을증여하였는바,위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40,459,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처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위 각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C이 피고에게 2017 . 7. 2.부터 2019 . 3. 27. 사이에 합계 40, 459, 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선고 2015두41937판결 참조).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즉 ① C과 피고는 부부 사이이고,부부간에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부담하는 점, ②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각 송금행위는 그 송금액이 평균 2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위 각 송금내역만을 근거로 C이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는 위와 같은 송금된 돈이 C과 피고,자녀들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위 돈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이 피고에게 위 합계 40,459,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홍지현